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118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 재판경과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118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1412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0가단74498 판결

### 전문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14128 판결

판결선고 2013. 4.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해우이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거나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일상가사의 범위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